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7 호

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2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

2.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자	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 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물품의 가격)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. <u>다만, 업무직근로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</u> 	<p>제16조(물품의 가격)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(현행과 같음) 2.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.